

대학기구의 제자리 찾기： 개혁된 대학의 주체적 조건

유초하

충북대 철학과 교수

1. 대학은 무엇으로 존재하는가?

대학의 존재의의는 문화의 창달에 기여하는 데 있다. 문화의 생산과 소비, 전승과 비판의 모든 측면에서 대학은 종사하고 개입한다. 대학인의 삶에는 철학과 과학의 연구와 학습, 문학 등 각종 예술에 대한 학문적 탐구와 창작·연행·연습, 윤리와 종교의 실질적·방법적 모색이 중심 요소로서 두루 포함된다. 또한 대학에서의 탐구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생활과 개인적 일상생활의 가치와 윤리의 탐색을 포함한다. 요컨대 대학은 인간과 사회와 자연의 본성과 구조와 상호관계에 대한 총체적 탐구의 마당이다.

교육주체를 중심으로 본 대학의 일차적 기능과 임무는 인간과 사회와 자연에 걸친 모든 영역의 주제에 대한 학문적 탐구, 그리고 다음 세대의 예비주체들에게 지식과 기술과 교양을 제공하는 교육이다. 나아가 대학은 현재의 전체 사회에 대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술적 대안과 더욱 올바른 윤리적·당위적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두번째의 임무는 표면상 비판이되, 심층적으로는 협조와 봉사이다. 그것은 또한 정치적으로는 자유와 권리의 행사이되, 학문적·문화적으로는 의무와 당위의 실천이다. 대학의 이러한 기능과 임무는 측면을 달리 조망할 때, 학습주체로 본 대학의 기능과 임무가 된다.

대학의 다양한 기능은 학문적 탐구를 핵심 내지 포괄적 메개로 하여 수행된다. 대학의 기

능은 현재의 초보적·사회정치적 주체이자 미래의 중심적·주도적 주체인 학생집단이 지성의 측면에서 성장하는 데에 직접 도움을 주는 일이며, 정서와 의지 및 실천의 측면에서 성숙하는 데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일이다. 학문의 형태로 과거의 문화유산을 계승·비판하고 현실의 문제에 대응·해결하며 그 결과와 과정 및 방법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이 대학의 임무이다. 대학의 임무수행은 대학 자신의 존립의의를 확장하는 일으면서 동시에 민족 국가 공동체의 문화수준을 고양하는 일이 된다. 대학교육은 우리 사회의 정치적·문화적 엘리트를 양성하는 기능과 전전하고 양심적인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기능을 동시에 담지한다. 국가사회의 발전은 대학사회의 발전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대학이 이러한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에 일차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다. 나아가 대학이 속한 경제정치적 사회공동체와의 관계에서 구속과 억압이 최소화되는 여건이 확립되어야 한다. 특히 정치문화적 현실에 대한 비판과 대안제출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대학인은 학문과 무관한 맥락에서 자신이 속한 국가사회를 구성하는 합법적 주체단위집단이면서 동시에 학문적 맥락에서는 현실주도세력들의 직접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邊境人 내지 일종의 국외자이다. 대학인이 일반사회와의 관계에서 누리는 ‘상아탑’적 특권은 대학인이 현실사회의 정치경제적 관계에서 직접적 권리담당자로 역할하지 않는다는 주·객관적 한계와 교호적으로 대응된다.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학은 존립의의를 상실한다. 오늘의 우리 사회에서 대학은 중병을 앓고 있다. 안으로 대학 구성원의 통합과 그에 바탕한 자율적 운영을 이루지 못하고, 밖으로 권력과 금력의 억압과 침해에 시달리며, 나아가 문화시장 개방에 따라 예기되는 무한경쟁 앞에 긴장과 불안에 싸여 있다.

총장과 교수, 학생, 사무직원 등 주체들이 각각의 正體性을 확보받지 못하고, 주체집단 상호간에 役能 수행상 갈등을 겪고 있다. 사립대학은 재단의 횡포로, 국립대학은 교육부의 간섭으로 자율성을 침해받는 일이 많다. 세계무역기구 출범에 대응하는 이른바 세계화는 그 주창자인 정부의 수준에서부터 주체적 준비를 다지기보다 밖을 향한 눈치보기와 흉내몸짓에 힘을 들이고 있고, 총장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제도적 주체들로 보는 한, 대학의 경우도 이런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 대학이 이러한 多重的 난관을 극복하고 역사적 사회적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구성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문제를 찾아내고 그 해결을 위한 실천에 동참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사학재단이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의 확보·신장에 협조하고, 나아가 부패관료와 비리재단의 왜곡에 물들지 않은 국민일반의 적극적 관심과 민주적 여론이 교육개혁을 향한 여망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2. 대학의 자율성에 전제되는 구성주체들의 성격

대학은 내부적으로 자율적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외부적으로 권력과 금력의 부당한 간섭과 억압에서 자유로운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이 자율적 공동체라는 것은 대학의 구성원들이 학내정치의 민주적 주체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담당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정치’란 “일정한 사회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치의 생산과 분배에 관해 권위있게 공동체의 의사를 형성하고 그에 따른 집행을 확보해 나가는 일”을 말한다. 즉, 학내정치란 대학의 운영에 관한 원칙과 기준 및 주요 사안을 결정·재결정하고 그에 따른 집행을 확립해

나가는 연속적 과정이다.

대학은 교수, 학생, 사무직원으로 구성된다.

대학이라는 사회는 이들 세 주체가 수행하는 역할들의 통합으로 운영되는 자율적 사회이다. 대학을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로 볼 때, 그 정체성은 이들 주체의 공동적 형성물이다. 그러나 이들 주체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교수이다. 앞서 말한 대학의 학내정치에서 교수, 학생, 직원의 세 주체 가운데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교수이다.

교수는 대상과 방법을 선택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강의 등 학생지도의 내용을 구성하며 소속 사회에 대해 기술적·당위적 수준에서 조언과 비판을 제공하는 일련의 학문적 행위에 있어 헌법적 自決權을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교수는 개개인이 하나의 기관이다. 교수는 연구물이나 강의를 통해 발표하는 학문적 견해로 인해 사법적 문제에 연루되지 않을 권리를 누려야 한다. 이는 학문과 교육의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교수의 학문적·교육적 자유가 공안논리로 위협받는 한, 국가 수준의 문화적 발전은커녕 대학의 자율성조차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교수는 교원일반의 특권으로서 현행법인이 아닌 한,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않는 특권을 지닌다(사립학교법 제60조, 교원지위향상특별법 제4조). 이 밖에 교수는 법률이 정한 사유에 의하지 않는 한, 권고에 의해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사립학교법 제56조, 교원지위향상특별법 제43조). 교원으로서 교수가 누리는 이러한 권리들의 바탕에는 교권에의 존중이 깔려 있다.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교육공무원법 제43조). 더욱 나아가 이들 권리는 원천적으로 학문과 예술에 대한 국민적 자유(헌법 제22조)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헌법 제31조)이라는 헌법적 자유에 근거한다.

교육현상을 놓고 볼 때, 학생은 받는 입장에 있고 교수는 주는 입장에 있다. 전공·교양의 지식의 문제에서 개인적·사회적인 삶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교수와 학생은 지도하고 지도받는 관계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학생은 생리적 성숙이나 법제상의 자격과는 일단 별도로 대학사회에서, 특히 교수와의 관계에서 온전한 성인으로 대우받지 못한다. 한편, 대학생은 교수와의 관계를 떠나서도 유보 없이 성인으로 인정받기에는 모자라는 측면이 있다. 현 체제에서 온전한 성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 생산에 참여하고 그럼으로써 대가를 받아 살아가는 위치에 서야 한다. 경제정치적 맥락에서 일정한 계급·계층에 속하여 권리행사와 의무수행에서 자신의 몫을 실천하게 됨으로써만 온전한 성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학생은 커리큘럼이나 학생자치활동 등 직접 관련되는 영역이 아닌 한, 설사 교수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학 운영의 공적 의사결정에서 상대적으로 제한된 결정권을 누릴 수밖에 없다.

대학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교수와 학생에 비해 사무직원은 부차적 지위에 선다. 이는 결코 직원이 교수나 학생보다 인격적으로나 신분상 하위에 놓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는 非敎職 사무직원뿐 아니라 半敎職 직원인 조교나 노무직 직원인 청소부나 경비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교수나 학장보다 성숙하고 선량한 청소부·경비원이나 타자수를 우리는 적지않게 볼 수 있다. 다만, 대학 운영의 공적 역할에서 교수와 학습이라는 대학 기능의 주된 분야와 그에 대한 보조 지원 부서는 같을 수 없다. 직원은 대학 행정 내지 학사업무의 처리에서 결정권을 가지는 기관이 아니다. 사무국 [처]장 또는 총장이 지시하는 대로 실무를 처리하는 하수인적 지위를 지닌다. 교육과 관련

하여 사무직원은 받는 쪽이라기보다는 주는 쪽에 속하되,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주는 일을 돋는 지위를 갖는다. 대학에서 사무직원이 학생에게 주는 교육적인 도움은 교수의 임무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간접적 기여이다. 대학생에 대해 사무직원은 행정처리의 측면에서 보조하고 지도하지만, 교육의 맥락에서 가르치거나 지도하는 것이 아니다. 일부 사무직원의 행태에서 드러나듯이 행정업무가 학교 운영의 중심인 것으로 자부하는 태도는 자발적 반성이 나 총장의 지도로 고쳐져야 한다.

대학의 세 주체 가운데 교수가 학내정치의 중심이라는 것은 학생과 직원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대학생은 생리적으로 모두 성인이고 법적으로도 암도적 다수가 성인이다. 그만큼 대학생은 대학사회에서 자주적 개인으로 대우받고 행동할 권리를 누려야 한다. 총장의 선출에서 개별 교수의 강의에 대한 평가에 이르기까지 대학 운영의 다양한 측면에서 학생은 사전·사후에 알 권리,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의견을 제출하고 실제로 반영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지녀야 한다. 특히 현재의 관심과 장래 준비와 관련하여 원하는 수업을 요구할 권리, 도서관과 실험실 및 제반 복지시설의 운영 방식 개선을 건의할 권리, 학생회와 동아리를 구성하고 자치적으로 운영할 자유와 권리 등은 대학생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들이다. 대학의 세 가지 임무인 연구, 교수, 비판·봉사의 실천도 교수의 편에서 볼 때 즉자적으로는 그 방법과 내용의 선택·결정의 측면에서 자유와 권리의 행사이되, 학생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의무의 이행이다.

대학 행정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직원은 사무직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를 당연히 가진다. 현법이 보장하는 노동삼권은 물론 대학사회를 구성하는 주체성원으로서 대학 운영의 합리화와 효율화를 위한 개인적·집단적

의견을 제시하고 실제로 반영하도록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직원은 직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자유와 권리, 직무수행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위한 제도를 개발하도록 노력하고 전의할 권리, 자신들의 이익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가능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요구할 권리, 나아가 총장 선출을 비롯한 대학 운영의 기본적인 정책사항의 결정에 적절한 수준에서 참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이렇듯 대학의 구성주체들이 행사하거나 수행하는 자유와 권리 및 의무의 측면에서 각각의 지위에 대응하는 만큼의 서로 다른 몫을 지닌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 다른 몫의 책임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대학자율을 위한 두 가지 단기적 과제

대학의 자율성은 정치적·법률적으로는 총장의 결정권이 대표하는 대외적 자주성에 의해 보장되며, 학문적·교육적으로는 교수 개개인의 결정권과 교수단 전체의 여론을 중심으로 실질화된다.

1) 총장의 자격과 권한 및 선출

총장은 대학이라는 기관과 대학사회를 종체적으로 대표한다. 총장은 대학공동체를 공공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대외적으로 자주성을 수호할 임무를 진다. 대학 운영의 내부적 의사결정에서, 특히 정책 수준의 의사결정에서 총장이 수행하는 역할은 거의 절대적이다. 우리 사회에서 총장이 지니는 지위와 역할은 기본적으로 법률과 제도에 근거한다.

한편, 대학 내부의 세 주체집단과의 관계로 볼 때, 총장의 권력과 권위는 대학 구성원에 의한 직접선출에서 온다. 선출되지 않은 총장

이 절대권력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대학사회를 자율적 공동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된다. 국민자치, 주민자치, 교육자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에 비추어 대학에서 총장을 구성주체들의 직접선출에 따라 뽑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민주사회의 일반상황에서 대학이라는 사회가 지닌 특수성, 특히 교수사회의 특성에 비추어 가장 바람직한 총장 선출방식은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30여 년의 군부정권이 남긴 유습이 잔존해 있고 사회 각 부면의 민주화가 아직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우리 사회에서 총장직선제의 보편화는 교수임용제의 폐지와 함께 긴절한 전환기적 요청으로 여전히 유효하다. 즉, 앞으로 정치 사회적 민주화가 우리 시대 자유민주주의의 정상수준으로 진전될 때까지 대학사회에서 자율성 수호자로서의 총장은 직선되어야 하고,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상존하는 교수재임용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최근 이른바 세계화의 추세와 관련하여 총장의 자격을 논할 때, 무엇보다 대학의 청사진을 팔아 외부의 자금을 사울 수 있는 외판원의 자질을 강조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그러나 ‘세일즈맨’의 상이 유능한 총장을 대표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 상품이나 문화의 교류에서 나타나는 단기간의 추세가 어떻든지 대학은 대학이다. 총장은 대학의 총체적 대표이며, 따라서 교수사회도 대표한다. 최고의, 아니면 적어도 대표적인, 지성인 집단을 대표하는 대학총장이 외판원이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시류 영합이 아닐 수 없다.

건전한 시민과 지적 엘리트를 키우는 전당의 대표로서 총장이 갖춰야 할 자격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문적 업적과 인격적 권위이다. 거기에 필수적으로 따라야 할 것으로는 민주화가 진행되는 전환기에 처한 대학공동체의 자율성과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 요구되는 민주적 신념과 실천의지이다. 기타 행정과 재정의 효

율화를 위한 외교력, 판매력, 기술적 합리성 등은 적어도 지금의 시점에서는 부차적인 자질이다.

학문과 교육의 자율과 가치를 보장하는 소극적이되 필수적인 조건으로, 총장후보는 일정기간 이상의 교수경력을 지닌 인사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총장이 공공기관 대표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단이나 정부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 국·공립과 사립을 막론하고 총장에게는 행정직원에 대한 총괄적 지도력과 지휘력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임 전보 근무평가 등 적절한 수준의 인사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2) 대학운영 의결기구의 제도화

교수집단은 대학사회의 중심적인 구성주체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이 대학의 직·간접적 구성원들 가운데 교수집단의 의사결정권과 교육실행권을 중심으로 실질화한다는 것은 앞에서 해명되었다. 그러한 점에서 교수들의 공동의사를 모아내고 그 결과를 대학 운영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제도를 확립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다. 87년 이래 전국의 대학에서는 교수들의 협의체나 대의적 의결기구를 결성해왔고, 이제 거의 모든 대학에서 전체 교수로 구성되는 교수협의회나 단과대학별 대표들이 모여 구성되는 대의기구인 교수평의회가 운영되고 있다. 지금껏 많은 대학에서 교수협의회·교수평의회는 대통령이나(국립대) 학교법인 내지 경영자가(사립대) 임명하는 총장(후보)의 선출을 비롯하여 대학 운영의 기본 정체 및 인사와 재정을 포함한 주요사안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그만큼 대학민주화의 한 핵심인 자율적 운영은 실질적 측면에서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

법률적·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나 비민주적 타율의 형식이 여전히 굳건히 버티고 있다.

교수는 대학사회의 중심적 주체라는 기본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학 운영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대의기구를 갖지 못하고 있다. 대학생과 사무직·노무직 직원들은 각각 자율·자치적 대의기구나 집행기구를 지니고 있고 그 기구들은 대개의 경우 공식기구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협의체 수준의 기구조차 공식기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교수집단은 학내정치의 마당에서 가장 후진적인 법제적 위치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교수들의 대의기구가 실질적 심의의결기구로 기능하고 있는 실제와는 동떨어진 사문화된 법률조문이 반시대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정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관료뿐 아니라 여·야의 국회의원들조차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87년 이래 진전된 정치적 현실 및 국민일반의 계몽된 정치의식을 두루 거역하는 전 시대적 의식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교육관료와 사학재단의 부패와 비리에 영합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교수(협의)회와 교수평의회는 서로 다른 수준에서 총장과 학장의 집행권에 대해 구속력을 발휘하는 심의 의결권을 지닌 공식기구로 인정되어야 한다. 대학과 대학 구성원이 놓인 현재의 위치를 고려할 때, 이는 대학 자율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다. 인사와 재정을 비롯하여 수업·성적·시설·정원 등 대학 운영의 모든 주요사항과 기본정책에 대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정확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교수들의 합의를 통한 때이다. 개인적·집단적 이해관계를 극복하는 양심적 사고와 객관적 판단, 편의 위주의 관료적 처리를 거부하는 치밀한 검토, 부당한 압력을 배제하는 공동의지의 관철 등의 점에서 교수들의 논의·의결보다 나은 대안은 현재로서는 없다. 다만,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서는 앞으로 교수 이외의 대학 구성 주체들에게도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한 시점에서는

나아가 학부모와 동창 및 지역사회 유지들의 의견과 협조를 두루 흡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도 있을 것이다.

백결음을 양보해서 만일 현재의 시점에서도 교수만으로 구성된 의결기구를 법제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교수 이외의 평의원을 포함하는 대학평의회를 두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때 대학평의회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은 단과대학별로 선출되는 당해학교 평교수가 되어야 하고, 교수가 아닌 평의원은 3분의 1 이내로 제한해야 하며, 나머지 6분의 1 내외의 평의원은 보직교수를 포함한 학내·외의 교수 중에서 총장이 지명하도록 한다. 이 경우 현재 교육법(제139~142조)과 사립학교법(제 15~26조의 2)에 포함된 대학평의원회와 학교법인이사회의 기능은 대학평의회의 기능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대학 운영의 기본정책 및 주요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기관으로서 교수평의회 내지 대학평의회를 두는 것은 대학사회가 자율·자치의 틀 속에서 집행과 의결을 포괄하는 자족적 민주공동체로 운영되도록 한다는 데 원천적인 의의가 있다. 이러한 제도는 절차상의 측면에서 볼 때, 총장이 행사하는 집행권의 전횡이나 과오를 방지·시정하는 의의와 함께 현재 권력과 금력의 압력에 포위된 총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결정권의 부담을 대내·외적으로 덜어주는 의미를 지닌다.

4. 대학운영에 관련된 사회적 주체들의 역할과 한계

전체 사회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학은 국가의 공적 활동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일에 속한다. 우리 선조들은 사람 기르는 일을 국가의 ‘百年之大計’로 불러왔다. 플라톤도 교육은 이 테아를 체득한 지혜계급 가운데 가장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이 맡아야 할 국가적 사업으로 규정했다. 교육은 고도의 공공성을 띤 사업이며 무거운 책임이 수반되는 사업이다. 그만큼 대학은 전체 사회로부터 중요한 임무를 위임받은 셈이다. 민주시대 사회에서 국가의 중요한 정치적 결정은 주권자인 국민의 일반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백년대계'인 교육에 관한 정책은 주권국민의 일반의사에 근거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1) 사학재단의 당위적 지위와 현실적 비리

지금껏 대학의 자주성은 많은 경우 주로 사립대학의 재단 곧 학교법인과 정부, 특히 교육부 사이의 문제로 인식되고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관행이다. 이러한 관행을 인정한다면 사립대학에서 재단이 차지하는 지위는 국립대학에서 종장을 포함한 전체 구성원이자니는 지위와 동렬의 것이 되고 만다. 그러나 실상 대학의 자주성 확립 여부는 국·공립과 사립의 차이와는 무관하게 대두되는 문제이다. 그것은 요컨대 총장이 대표하는 자율적 공동체에 대한 외부의 간섭과 통제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대학의 운영에 간섭하고 자율권을 통제함으로써 자주성을 침해하는 외부의 주체에는 정부만이 아니라 재단이 포함된다. 대학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빈도와 수준으로 볼 때, 정부의 권력보다는 재단의 금력이 훨씬 정도가 심하고 질적으로 압랄하다.

외부의 간섭과 통제로부터의 자유를 학교법인이 누리도록 한다는 관행적 담론은 실질적으로는 재단, 특히 재단이사장이 대학 운영을 좌우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의 자주성은 학교법인 곧 재단을 주체로 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학생·직원으로 이루어진 대학공동체를 주체로 하고 권력과 금력을 대상으로 하여 성립하는 것이다. 즉, 재단은 대학의 자주성에 대해 그 주체가 아니라 객체의 위치에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총장을 포함한 대학의 일차적 구성주체들 위에 군림하는 주인의 위치에 서도록 규정한 현행 사립학교법은 근본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만일 논의의 형식을 양보하여 현재의 법 제적 관계를 기준으로 표현해야 한다면, 재단은 대학의 내부정치에 간여하지 않는 선의의 후원자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 요컨대 정부는 재단으로 하여금 대학 운영에 대해 법적·도덕적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대학 구성 주체들에게 더 이상 횡포를 부리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감독해야 한다.

학교법인이 사립대학을 설치한 것은 교육을 통해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선의에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설립자의 가륵한 뜻은 2세, 3세로 세습되면서 탈색하거나 오히려 악의로 전환하고 말았다. 현재 학생수와 학교수에서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80%를 담당하고 있는 사립학교의 경우, 1백여 개 학교 중 열 개 미만을 제외한 압도적 다수가 교육기관이라기보다는 영리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들 재단의 타락과 횡포는 인간 이하의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현재 사립대학 학교법인을 장악하고 있는 이사장과 그 측근들이 설립자의 선의와 충정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사유물로 보거나, 특히 개인적 영리를 위한 도구로 악용하는 탈법적이고 반도덕적인 행태를 불식해야 한다. 엄밀히 볼 때 재단측의 인사들은 설립자가 단순히 돈을 투자함으로써 그 이전에는 누릴 수 없었던 사회적 명망과 친사를 듣게 되었다는 점, 즉 일종의 상향적 계층이동을 달성했다는 점, 나아가 그 덕분에 자손이나 친·인척 또한 직·간접적으로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점 등으로 이미 충분히 보상을 받았다. 그러므로 오늘에 와서까지 그들이 더 이상의 이익과 권세를 탐하는 것은 인간적 도리가 아니다.

현재 사학재단의 비리는 교육관료와의 결탁

에 힘입어 자행되고 있다. 따라서 사학비리의 척결은 부패관료의 처단과 동시에 진행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사학재단과 권력기구와의 유착관계는 지난 90년 3월의 사립학교법 개악에서 예증된 바 있듯이 막대한 자금을 동원한 법인협의회가 문공위원회 소속을 중심으로 다수의 국회의원들을 여·야의 구분 없이 포섭하는 데에까지 이르렀다. 심지어 유력한 사학재단 가운데는 그들 자신이 직접 여·야의 국회의원으로 진출해 있으며, 그 지위를 이용하여 여·야의 영수급 정치권력에 접근함으로써 비리에 싸인 사학재단들의 공동 로비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당면 교육개혁은 일부 정치권을 포함한 정경유착세력의 비리를 한꺼번에 척결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성취하는 데에는 대통령이나 정부의 개혁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 양심적 교육주체들과 진보정치세력, 그리고 국민일반의 민주적 여론을 통합하는 과정을 거친으로써만 교육개혁은 현실적 돌파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정부의 비리척결 임무와 그 한계

부패한 교육관료와 비리의 온상인 다수 사학재단을 척결하는 일은 현재의 시점에서는 일차적으로 정부의 임무이다. 현재 교육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학재단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 임무는 이런 의미에서 이중적 과업으로 이루어진다. 대학교육과 관련하여 현재 정부가 개입하는 주된 통로는 교육부이다. 교육부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부패한 교육관료들이 득시글거리고 있다. 그들은 교육의 공공성을 왜곡하여 교직자들로 하여금 관료적 기구에 복속해야 할 피고용자로서의 책임을 강요하면서, 교육과 교직자의 헌법적 권리인 자주성과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유린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어둠의 세력집단이다. 이사관급 이상의 교육관료집단 중 다수는 자연과 학연 등의

특수한 연고로 묶인 편파적 집단이다. 그들 기득권 집단은 심지어 장관이나 대통령의 교육개혁 의지에 대해서조차 실질적 태업과 같은 교묘한 방식으로 찬물을 끼얹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일대 정리야말로 당면한 교육개혁의 제일차적 과제라 할 것이다.

우리 교육은 50년간의 비민주정권, 특히 33년에 걸친 군부정권을 통해 혼란되고 부패했다. 이제 그러한 교육질서는 근본적·포괄적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교육의 일대개혁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점에서 정통성 있는 민간정부가 교육개혁을 추진한다면 그것은 일단 반갑고 또한 정당한 일이다. 대통령이 교육관련 인사들로 구성한 교육개혁위원회의 활동 또한 나름대로 의미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미흡하다. 주권국민의 일반여론과 사회역사적 통찰력을 갖춘 인사들의 비판적 여론을 두루 통합할 때에만 교육개혁안은 적실한 내용을 포괄할 수 있고 또 현실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정부가 기득권 세력의 반동적 저항을 뚫고 진정한 교육개혁에 앞장서서 광범한 양심적 민주세력의 지혜와 실천적 노력을 모아낸다면 교육계에 만연한 비리와 부패를 청산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비상시기에 비상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개혁은 그러나 상시적 형태로 지속될 수 없다. 진정한 의미의 교육개혁은 부정적 요소를 도려내는 데 머물지 않고 정상적 관행을 정착시킴으로써 비로소 일단 마무리된다. 여기서 환수술 이후의 진정한 교육의 시대, 민주·자율·자주 교육의 시대를 열어제기는 과업은 대학을 대학인의 손에, 교육을 교육주체들의 손에 돌려주는 데에서 시작된다. 대학의 정상화는 재단과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대학공동체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적·관행적 여건을 마련해주는 수준에서 전반적으로 완결된다.

일차적으로 교육은 국민일반의 편에서는 주

권자로서 누려야 할 권리의 행사 공간이며, 정부의 편에서는 公僕 기관으로서 이행해야 할 의무의 수행 공간이다. 학문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적 자유권과 관련하여 입법·사법·행정의 권력기관들은 국민일반이나 대학에 대해 실질적으로 보장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한 책임을 가장 직접 담당하는 것이 교육부를 위시한 행정부이다. 교육에 대한 정부의 권한행사는 국민에 대한 국가기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정부의 통제와 지도, 재단의 개입과 결정은 기본적으로 대학의 자율적 운영과 그를 통한 문화창달 및 현실개선을 효율화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대학의 자율성과 자주성의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담지자이자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할 책임의 담지자는 대학법인 또는 그 실질내용인 재단(이사장)이 아니라 교수, 학생, 직원과 총장으로 구성된 대학사회의 공동주체라는 점을 정부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한다.

앞에서 말한 교육주권에 비추어, 한시적 임기 동안 재임하는 정치권력이나 교육행정부서가 대학교육의 구체적 내용이나 대학 운영의 세부적 원칙에 이르기까지 하나 하나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일종의 자율성·자주권의 침해이자 반민주적 월권이다. 교육계의 양대 비리세력들을 척결함으로써 대학의 정상적인 경

상적 운영을 위한 기본조건이 확립된 이후의 시점에서라면 교육의 이차적·간접적 주체인 권력기관들은 실정법이 규정하는 한도 내의 경상적 업무처리의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

학과 통합과 학부제 운영, 전문기술인 양성, 행정·재정의 합리화와 공개, 사무직원의 전문화, 서비스·기자재의 증대와 사용 효율화, 대학 간 협의체 구성, 국제경쟁력 제고 등등의 대학 운영 향상 방안들은 모두 대학 안팎의 기구나 주체집단들이 제자리를 찾아앉은 다음에야 가능한 과제들이며, 또한 그 때에는 원천적 장애 없이 진전될 수 있는 과업들이다. 이들 과업은 정부가 원칙에서 세목에 이르도록 친절하게 방안을 제시하기보다 오히려 거시적 지도·감독이라는 최소한의 개입에 머물면서 자율의 제도화를 진전시키고 재정의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주력할 때 더욱 원활하게 성취될 것이다. ■

유초하/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철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연구원, 강원대·고려대·동국대 강사 등을 거쳐 현재는 충북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저서로 『한국사상사의 인식』 등이 있고, 『동서양의 철학적 전통과 실천적 비판』, 『정약용의 우주관』, 『동서의 철학적 전통에서 본 육체』, 『조선후기 성리학의 사회관』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